



구의회사무국



수신자 강북구청장(행정지원과장)

(경유)

제 목 구청장 의견표명 요청

1. 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(의안의 발의)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송부하오니,
2.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』 제51조제2항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안건현황

연번	발의의원	안건명	비고
1	박문수, 구본승 김영준, 이백균 이정식, 장동우 강선경	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붙임 조례안 1부. 끝.

구의회사무국장

주무관 **이동민** 의사팀장 **노희범** 구의회사무국장 06/10 **정명수**

협조자 전문위원 **조병훈**

시행 구의회사무국-4872 () 접수 ()

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(수유동) / <http://council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4521 /전송 02-901-4519 / 대시민공개